

#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

### 1. 심사과정

- 제출일자: 2023. 9. 27.
- 제출자: 서구청장
- 회부일자: 2023. 10. 4.(의안번호 제482호)
- 상정일자: 제24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 
제1차 사회도시위원회(2023. 10. 16.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: 하경호 환경청소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과 상위법령인 「지하수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수정·정비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설치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(~2028.12.31.)  
(안 제11조의2)
- 상위 법령인 「지하수법」에서의 위임에 따라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수정(안 제3조)
-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분에 대한 수수료 보전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

설치하도록 수정(안 제11조)

- 상위 법령인 「지하수법」에 맞게 정비(안 제17조, 제19조, 제20조, 제23조, 제24조의2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진호)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 따라 특정세입·세출을 회계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된 서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, 관련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와 특별회계의 설치를 당연 사항으로 수정하는 등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제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 검토 결과 주요 개정 사항은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존속기한 연장에 관해서는 입법예고 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는 등 관련 입법 절차를 모두 적정하게 이행하였으므로 법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# 5. 심사결과: 원안가결